

문서번호	청소과-14665
결재일자	2016.6.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668호

주무관	재활용팀장	청소과장	복지환경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장영주	김완배	이상욱	오정식	김경호	06/07 김기동
협 조					
	정책홍보담당관	이재선			
	건축과장	代조덕래			

-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-
소형공동주택 신축시 분리수거용기 설치 방안



복 지 환 경 국
 (청 소 과)

-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-
소형공동주택 신축시 분리수거용기 설치 방안

공동주택 거주자가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신축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를 권고하여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I 현황 및 문제점

현 황

○ 관내 주택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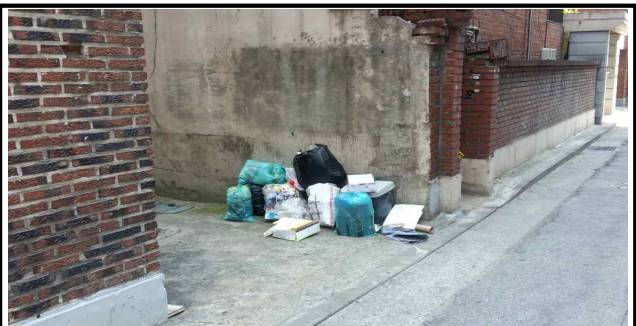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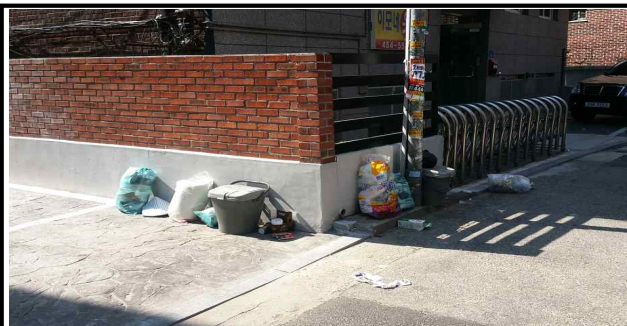
(단위 : 호)

합계	단독주택	아파트	다가구주택	연립주택	다세대주택	비고
132,984	5,256	27,748	70,716	4,037	25,227	2015.10.31 현재

- 단독주택 및 아파트에 비해 건물 당 개별 쓰레기 배출이 여러가구인 소형 공동주택이 월등히 많은 비율 차지

○ 소형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배출현황

- 대부분이 분리배출 장소가 별도로 없이 문전배출
- 아파트와 달리 관리인이 없어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
- 음식물쓰레기 물기 미제거 후 배출로 발생량감소 및 주변정리 미흡



□ 분리배출용기 의무 설치대상

- 연면적 1,000 m^2 이상의 건물(소유자가 같은 연접한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로 봄)
 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6
-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-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

□ 현황에 따른 문제점

- 분리배출 장소가 별도로 없는 소형공동주택의 경우 건물별 배출되는 봉투가 다수로 무단투기 벌미 제공
 - 보행자들의 담배꽂초 및 이웃 건물에 나오는 봉투 등 무단투기
- 별도의 수거공간 및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와 달리 분리배출의식 미흡에 따른 책임의식 결여
 - 종량제 및 재활용 투명봉투 내 일반, 음식물, 재활용품 혼합배출
-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재활용품 파봉 후 잔재 미처리
 - 관내 다수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바, 주로 재활용 봉투 파봉 후 종이, 병 및 캔 등 매각이 용이하고 단가가 높은 품목만 수집 후 잔재 미처리로 골목길 무단투기심화 및 수거작업 불편 초래
- 작은 재활용품목(영수증, 사탕봉지 등)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투입 가능성 다분
 - 재활용으로 잘 분리되지 않는 작은 품목들의 종량제봉투 혼합배출로 일반쓰레기 발생량 상승

Ⅲ 추진계획

□ 건축허가시 분리배출 관련시설 설치 권고

- 설치대상 : 신축 소형 공동주택(연면적 1,000㎡ 이하)
 - 관련법상 의무설치 대상 건물뿐 아니라 소형 공동주택에도 설치 권고
- 추진기간 : 방침수립일 ~ 계속
- 추진내용
 -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 권고
 - 분리수거용기는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품목별(캔류, 유리병, 플라스틱류 등)로 색상에 그림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 4구 이상 설치
 - 포집백 또는 망은 입주자 부담
 - 음식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RFID 기반 시스템 구축 권고
 -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하는 무게 측정방식의 종량기기 설치
 - 설치기준 : 30~35세대/1대, 60~65세대/1대
- 추진방법
 - 건축허가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, 음식폐기물 종량기(RFID) 설계 반영 여부 확인 및 미반영시 허가조건 부여 또는 권고
 - 배치도에 설치위치 및 설치규격 등 표기
 - 사용승인시 설치여부 확인
 - 해당 감리건축사 설치 확인서 및 증빙사진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

Ⅳ 기대효과

- 이용상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-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 향상 및 음식물류 발생량 감축 기대

- 방침수립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시행 건 축 과
- 건축사회 등에 홍보로 참여분위기 조성 청 소 과
- 관련매체 홍보 정책홍보담당관